

「2026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의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인 검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환경신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6년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 **(지원규모)** 427백만 원
- **(지원대상)**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단, 전년도 지원대상 중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지원방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험분석비용, 검증수수료 지원
- **(지원내용)**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VAT 제외) 및 기술검증 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VAT 제외)를 합산한 총액)의 70% 이내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검증 등을 신청한 경우, 총액을 신청기업 수로 나눈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해 지원

- 다른 정부사업을 통해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중앙·지방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동 사업의 지원금을 합하여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 측의 사유로 신청을 중도 취하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납

구 분	세부내용
신기술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근거)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 (지원 범위) 신기술인증 서류심사의 현장조사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시험·분석비용(VAT 제외)의 최대 70% 이내 - (신청 시기)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완료 후 신청 가능
기술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항 [별표7],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 (지원 범위) 검증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용(VAT제외)를 합산한 총액)의 최대 70% 이내 - (신청 시기) 검증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용(VAT제외)를 합산한 총액) 완납 후 신청 가능

※ 탄소저감성능(포집, 활용, 저장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기술 또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의 경우 평가등록비·수수료 및 시험·분석 비용 등 평가 소요 비용 전액 지원 가능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1차('26. 4.), 2차('26. 6.), 3차('26. 9.)
 ※ 세부 접수일정은 에코스퀘어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접수방법) 공문,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사업 접수 및 문의>

- 접수·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전화 : 02-2284-1629
- 이메일 : air07@keiti.re.kr

- 덧붙임
1. 환경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지원신청서.
 2.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신청서.
 3. 정부지원금 수령사실 확인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끝.

<덧붙임 3>

정부지원금 수령사실 확인 서약서

1. 신기술인검증 신청정보

신청항목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input type="checkbox"/> 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검증수수료) <input type="checkbox"/>
기술명	
신청인	(※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모두 작성)

2. 신청기술 관련 정부지원금 수령사실 여부

수령구분	있음 <input type="checkbox"/> (3. 수령 세부내역 작성)
	없음 <input type="checkbox"/> (3. 수령 세부내역 작성 생략)

3. 수령 세부내역

내 용		비 고
지원기관명		정부지원금 지원 기관명
수령기관명		신청인 중 지원금 수령기관명
과제명(사업명)		
수령금액(원)		
수령일자	년 월 일	
집행일자	년 월 일	

3. 만일, 당사에서 작성한 ‘정부지원금 수령사실 확인 서약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래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기 지급받은 환경신기술인검증 지원금 전액 반납

나. 법정이율 연5%를 적용하여 추가 반납(「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준용)

* 기준: 환경신기술인검증 지원금 지원일 ~ 반납 통보일

다. 5년간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한

* 기준: 위 가., 나.의 반납 통보일

20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덧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필수)	신청기업 정보(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 소재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자본금, 업종, 매출액, 환경분야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사업 담당자 정보(성명, 소속기관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번호, 이메일), 신청기술 관련 정부지원금 수령 이력 (정부지원금 지원 기관명, 사업명, 수령금액, 수령일자, 집행일자)
수집·이용 목적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신청 및 접수, 지원금 지급 관리
제공 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보유·이용 기간	지원금 지원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10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

제공 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